

# 냉정초등학교 규칙



냉 정 초 등 학 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냉정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냉정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냉정교육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냉정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369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교기념일 : 5월 2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사계절 방학

- ②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 ③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 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교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냉정학교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 ① 평가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졸업사정회 결과를 근거로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입학·재취학·전학·휴학·퇴학

제16조(입학자격)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6세 아동
  2. 만 5세 아동 중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단, 조기입학으로 학급이 증가할 경우는 허가할 수 없다)

제17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취학) 장기 입원이나 장기 결석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자진 포기했던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할 수 있다.

제19조(전입학)

- ① 본교에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73조 및 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입학 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1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입학서류) 본교에 전입학하려는 자는 전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25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①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우유급식비, 방과후 활동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26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7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29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장재하지 않는다.

##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0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냉정학교 전교 어린이회(이하 ‘어린이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장 출결 처리

제32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편입,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제33조 (출석 인정)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년간 (10일) 이내로 하되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학교장허가 현장체험학습 지침에 따른다.**
- ④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2 근거)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b>결 혼</b>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b>1</b>      |
| <b>입 양</b> | 본인   | <b>20(신설)</b> |
| <b>회 갑</b>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br>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b>1</b>      |
| <b>사 망</b>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b>5</b>      |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삼촌, 외삼촌,<br>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b>2</b>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가능

### 제34조 (결석의 종류)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 담임에게 통보(전화, 편지등)를 하고 등교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등)
-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제12장 보 칙

### 제35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1999.4.1일부터 시행한다.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이 학칙은 2000.3.21일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안 2000.3.20)
- ④ 이 학칙은 2001.3.26일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안 2001.3.25)
- ⑤ 이 학칙은 2003.3.27일부터 시행한다.(3차 개정안 2003.3.26)

- ⑥ 이 학칙은 2004.3.26일부터 시행한다.(4차 개정안 2004.3.25)
- ⑦ 이 학칙은 2005.3.27일부터 시행한다.(5차 개정안 2005.3.26)
- ⑧ 이 학칙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6차 개정안 2006.2.27)
- ⑨ 이 학칙은 2007.3.24일부터 시행한다.(7차 개정안 2007.3.23)
- ⑩ 이 학칙은 2008.5.22일부터 시행한다.(8차 개정안 2008.5.21)
- ⑪ 이 학칙은 2009.3.25일부터 시행한다.(9차 개정안 2009.3.24)
- ⑫ 이 학칙은 2010.5.1일부터 시행한다.(10차 개정안 2010.4.27)
- ⑬ 이 학칙은 2011.9.1일부터 시행한다.(11차 개정안 2011.6.29.)
- ⑭ 이 학칙은 2016.6.15.일부터 시행한다.(12차 개정안 2016.6.14.)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6 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냉정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냉정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